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1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김예지·주호영·송석준

임종득 • 최수진 • 강대식

김도읍 · 김대식 · 김선교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 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65조제4항 단서).
-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제11항).

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5조제11항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는"으로, "파일"을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에 한정한다)"로,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본문에 따른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 여야 한다.

제65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른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 보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 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256조제5항제5호 중 "제65조제13항"을 "제65조제1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4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	
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	
만,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u>하되</u> ,	<u>한다</u> .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① <u>후보자가</u> 시각장애선거인에	① <u>후보자는</u>
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	

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u>파일</u> 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 거공보를 <u>포함한다</u>)와 같이 <u>제</u> 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 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u><신</u> 설>

① ~ ⑭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 4. (생 략)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에 한정
<u>한다)</u>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본문에 따
른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
보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른 저
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할 지역을 관
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u>한다.</u>
◎ ~ ◎ (현행 제12항부터 제
14항까지와 같음)
1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 ~ 4. (현행과 같음)

5. 제64조제8항(<u>제65조제13항</u>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 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 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 략)

5제65조제14항
6. ~ 12. (현행과 같음)